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6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김기웅・임종득・우재준

권영세 • 이인선 • 강선영

주호영 · 김승수 · 한기호

유용원 · 유영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장관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때, 남북한 간 협의나 공감대 없이 우리 측이 독자적으로 수립한다는점에서 매우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데 사전에 우리 측의 기본 입장과 추진 방향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음. 실제로 동 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4차례 수립되었으나 '계획을 위한 계획', '보고를 위한 계획' 수준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이 사실임.

이런 점에서 오히려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에 부합하고 남북 간 원만한 협상,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현재는 모든 남북회담의 지휘·통제를 통일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 군사 등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남북협상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그 분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협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남북회담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에 대한 규정에 이를 보좌하는 수행원등 실무진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을 "대북특별사절, 제15조의2에 따른 수행원등"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제23조의2에 따른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계획"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행원등)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원, 자문위원 또는 지원인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의3(해임)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수행원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종료된 때에 그 직(職)에서 해임된다.

제18조제1항 중 "파견공무원"을 "수행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사 또는 경제 분야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지휘·감독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중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를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수행원등으로"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남북합의서가 공포된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

행 전에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경우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대북특별사절, <u>제15조의2에 따른</u> 수행원등---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삭 제>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 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 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 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 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 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와 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 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 요한 사항
-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 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

 경: 변경 후 30일 이내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

<삭 제>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을 수립 • 변경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 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변경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 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 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 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 |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제 23조의2에 따른 남북합의서 이 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 ⑥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18조(지휘·감독 등) ①통일부 저 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u>파견</u> 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 감독을 한다. <단서 신설>

| <u>행을 위한 계획</u> |
|--------------------|
| |
|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15조의2(수행원등) 통일부장관 |
| 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 |
| 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 |
|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수행원, 자문위원 또는 지원인 |
| 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 |
| 을 임명할 수 있다. |
| 제15조의3(해임) 남북회담대표, |
| 대북특별사절 및 수행원등은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
|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 |
| 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에 그 |
| 직(職)에서 해임된다. |
| 제18조(지휘·감독 등) ① |
| <u>수행원등</u> |
| |
| |
| <u>다만, 군사 또는</u> |

경제 분야 등 특정한 분야의

② (생략)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 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 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 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통일 부장관은 지휘・감독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무원 의제)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 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 시절 및 수행원등으로-----

> 제23조의2(남북합의서 이행을 위 한 계획 수립) ① 통일부장관 은 제22조에 따라 남북합의서 가 공포된 후 3개월 이내에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합 의서 이행을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계획 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 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